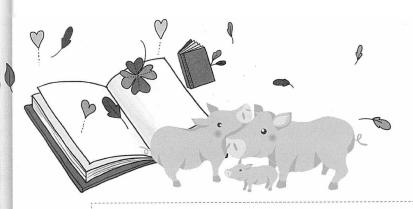
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!

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대하여 알아보자



이력사업본부 이력관리팀 차장 손 하식

기존의 소 및 쇠고기이력제에 기반하여 돼지(돼지고기)를 포함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방역의 효율성 제고와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지난해 12월 27일에 공포되었다. 이에 소(쇠고기)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(돼지고기)까지 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.

81.

공포 내용

- □ 법률(제12119호) 제명: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
- 시행일자 : 공포(13, 12, 27)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(14, 12, 28)

88

주요내용

- □ 법률 제명을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(법률 제12119호)
 - 이력제 적용대상을 소(쇠고기)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(돼지고기)까지 타 품종으로 확대
- □ 소 및 돼져의 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발급 근거 마련
 - '땅'(지번) 중심의 농장별 고유번호 부여로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
- □ 소(쇠고기) 및 돼지(돼지고기)의 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 규정 마련
 - 가축시장 거래내역 신고, 도매시장 경매내역 신고, 거래내역 신고

- □ 돼지고기 이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 마련
 - 농장식별번호 신청 · 부여 및 표시
 - •돼지(종돈)의 경우 출생, 폐사, 이동 등 신고
 - •이력번호의 신청 및 발급 · 통보
 - 도축업자, 식육포장처리업자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육판매업자에 의한 이력번호의 표시, 거래명세서 기록
- □ 법의 실효성 강화 수단 확충
 -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등 의무 대상 및 품목 확대
 - (대상)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까지 포함
 - (품목) 국내산이력축산물(쇠고기, 돼지고기) 거래신고까지 포함
 - •보고 및 출입검사 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, 시 · 도지사까지 확대하여 제도이행 대상자에 대한 단속 강화
 - 유통업소의 벌금 · 과태료 처분(연 2회 이상)이 확정된 경우 농식품부 등의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

돼지고기이력제 단계별 주요내용

구분		신고 및 표시사항	표시화면
사육단계	신교	•사육현황 신고 •종돈의 경우 출생·이동·폐사	
	표시	•농장식별번호 표시 •종돈의 경우 귀표등 부착	
도축단계	신고	・이력번호 신청 및 부여 ・도축처리실적 신고	Tourse !
	표시	•이력번호 표시	Sep 6
가공단계	신고	•매입실적 신고 •포장처리실적 신고 •거래내역 신고	는 vion 신원실(1위장) 15.8 247 - PAGNIMIT
	표시	・포장지에 이력(묶음)번호 표시 ・거래명세서에 이력(묶음)번호 표시	The second
판매	신고	•매입실적 신고 •거래내역 신고	
	표시	•포장지 및 식육표지판에 이력(묶음)번호 표시	

소비자정보 제공 4 보지고기 이익성보

- 시작면보

- 이익면도
- 12 기업 (시작면도)

- 13 기업 (시작면도)

- 13 기업 (시작면도)

- 13 기업 (시작면도)

- 14 기업 (시작면로)

-

